

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은진의원 대표발의)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2. 6. 이은진 의원 외 11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2. 6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
(2023. 12. 20. 원안가결)

2. 제안요지설명(이은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위기와 고령화 문제 등에 대응하여 ‘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및 고령자’ 등 다양한 교통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 서비스 배려를 위해 ‘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’을 도입하고, 기존의 ‘어르신우선 주차구역’ 및 ‘임산부 우선주차구역’ 등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어르신우선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삭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의2 삭제)
-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의3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박만규 전문위원)

-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‘어르신우선 주차구역’ 및 ‘임산부우선 주차구역’ 등을 ‘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’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,

- 주요내용으로는 ‘어르신우선 주차구역’의 설치기준을 삭제하는 것과 ‘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’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
- 조례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고, 기존의 어르신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자, 임산부 등 다양한 교통약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하나,
- 기존의 어르신우선 주차구획, 임산부 우선 주차구획, 여성 배려 주차구획등의 재도색 없이 혼용되어 운영 될 경우에 시민들의 혼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
- 교통약자뿐 아니라 일반인 주차시에도 이를 규제할 수 없기에 가족배려주차 구획의 제도 정착을 위하여 충분한 제도 및 홍보 방안에 대한 실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